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2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 안호영・송옥주・최종윤

앙이원영 · 노웅래 · 장철민

이수진 · 송갑석 · 김철민

김윤덕 · 임종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이하 '수지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만 수지율에 반영되고, 하청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수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하여 하청·파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사용업체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원청·사용업체의 '위

험의 외주화'를 더욱 유인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하청·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또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기업이 재해 발생 정도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보험료 감소분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세 사 업장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산재예방투자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비율을"을 "비율(이하'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관계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급인·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 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 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 2.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생한 업 무상 재해
-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 이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해당 사업의 직접고용 근로자, 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위반여부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윌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생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	
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	
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	
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	
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	
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u>비</u>	<u>用</u>]

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 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 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신 설>

<u>율(이하</u>	'개별	실적요	.율'이	라	한
다)을					

----.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 · 관계 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8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u>수급인 · 관계수</u> 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2조제3호에 따른 파 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 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 재보험급여 금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 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 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신 설>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 1. 도급인이「산업안전보건법」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 2.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업무상 재해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해당 사업의 직접고용 근로자, 수급인·관

③ ~ ⑩ (생 략)

계수급인 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위반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수 있다.

<u>⑤</u> ~ <u>⑫</u> (현행 제3항부터 제10 항까지와 같음)